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50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송옥주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4. 6. 20.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나 촌락의 생활 형태·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제3종 구역¹⁾에 연접한 지역 주민들이 현행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한 소음대책지역과 다른 경계 설정 요구를 할 경우에,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u>제5조제1항</u>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6.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u>제5조제1항 및 제4항</u> ----- ----- -----.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u>

1) 현행 법령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눈 소음대책지역임. 제1종 구역·제2종 구역·제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제1종 구역이 가장 소음영향도가 높은 구역임. 따라서 제3종 구역은 소음대책지역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하게 됨. (참고자료 1 참조)

현행	개정안
	<u>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해당 지역의 경작지 비율·인구밀도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도시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결한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u> <u>2. 비도시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결한 지역으로서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u>

현행	개정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계 설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규정대로 소음영향도²⁾만을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여 발생하고 있는 형평성에 대한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보상과 관련한 민원 상당수는 주거지가 제3종 구역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제3종 구역의 경계와 가까운 거주민들이 현실적인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임.³⁾

개정안 내용과 같이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연접 주민들의 형평성과 관련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 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

3) 2022년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124건(전부 기각), 2023년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51건(전부 기각).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 청원,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민원 등이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민원 제기는 상당한 것으로 보임.

[소음대책지역 경계지 설정 기준 비교]

구 분	현 행(동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개정안
도시지역	건축물 기준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
비도시지역	건축물 기준	촌락의 생활 형태 및 지형지물의 경계

□ 다만, 소음대책지역의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의 추가 재정 소요와⁴⁾ 확대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유사 민원 제기 가능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경계지 설정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로 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외 공동주택 등 기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공항 소음방지법 시행령과 같이⁵⁾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경계지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⁶⁾

4) 동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2024. 8. 19. 현재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한편 국방부는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약 31,000명 증가하여 약 45 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음.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6)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현재 진행중임(참고자료 2 참조)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1.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시행령 별표)

구 분		소음대책지역	기 타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		제1종 구역	-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	-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	대도시지역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기타지역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군사격장	대형화기	제1종 구역		94(dB(C)) 이상
		제2종 구역		90(dB(C)) 이상 94(dB(C)) 미만
		제3종 구역		84(dB(C)) 이상 90(dB(C)) 미만
	소형화기	제1종 구역		82이상(dB(A))
		제2종 구역		77(dB(A)) 이상 82(dB(A)) 미만
		제3종 구역		69(dB(A)) 이상 77(dB(A)) 미만

※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

※ dB(C):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대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 dB(A):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소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2. 송옥주 의원안과 시행령 개정안 비교

<u>법률</u> 개정안(송옥주 의원안) (제5조)	<u>시행령</u> 개정안(제2조)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u>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u>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해당 지역의 경작지 비율·인구밀도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시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연접한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송옥주 의원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차이점>

- 송옥주 의원안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현행 소음대책지역과 달리 지정·고시할 수 있는 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요구가 없어도 현행 소음대책지역과 달리 지정·고시할 수 있음.